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489

발의연월일: 2024. 8. 1.

발 의 자: 장종태·김선민·문진석

이기헌 • 이해민 • 황정아

이정문 • 황운하 • 김원이

이재관 · 김 윤 · 김남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은 부칙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매년 국민건강 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 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 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그러나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2025년)을 목전에 두고 있고,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은 점차 가속화되는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임.

이 같은 건강보험의 재정적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할 필

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여 예산편성 시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를 삭제하고, 현행법에 기금사용의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4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기금사용의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1 08조의2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신 설> 제25조의2(기금사용의 특례) 보건 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금에서 「국 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의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 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108조의2제4 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 <삭 제> 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 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 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 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 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 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

과할 수 없다.